

# 최근 선진국의 경쟁법 운용 동향

자료 제공 / KDI 법경제 연구센터 · 협회

## EC위원회, 자동차 판매회사 EC경쟁법 適用除外 認定

EC委員會는 94년 10월 5일, 유럽의 자동차 제조회사 및 판매 회사의 배타적 판매기구의 특권적 시스템과 관련하여 일정한 개정을 거쳐서 향후 10년 동안 이를 EC경쟁법 適用除外 대상으로 인정키로 하였다.

EC위원회는 EC경쟁법 적용의 면제조건으로 소비자가 유럽의 어떤 국가에서 자동차를 구입 하더라도 최고의 商去來가 보장되어야 하며, 자동차 판매 서비스에 관한 경쟁이 증가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개정에는 다음 내용들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첫째, 판매회사에게 둘 이상의 제조회사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는 것을 인정한다. 둘째, 제품 판매 목표는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간의 협정에 의해서만 설정할 수 있다. 셋째, 품질이 동등한 예비 부품이라면 판매회사는 제조업자 이외의 업자에게서도 예비 부품을 구입할 수 있다. 넷째, 독립적인 수리업자는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기술 지식을 입수 할 수 있다. 다섯째, 자사제품 판

매 지역 이외에서도 자유로이 광고할 수 있다. 여섯째,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간의 협정 기간을 최단 4년에서 5년으로, 종료의 최단 통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 등이다.

그러나 —括適用 免除에 관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조회사들은 여전히 제품을 공급할 판매회사의 선택이 가능하고 —括適用 免除가 95년 6월 1일로 종료가 된 후에도 10년간은 판매지역을 한정해서 배타적 프랜차이즈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초안에서는 소비자의 이익확보 차원에서 자동차와 같은 다수의 부품으로 된 복합상품의 판매와 서비스의 안전보호 기준을 상정하고 있다.

(94. 10. 6. Financial Times)

gruppe(독일 최대의 민간 TV 회사), Deutsche Telekom(독일 전화회사)가 출자한 것으로 1,490만 가입 가구에 유료 방송 프로그램, TV 쇼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C委員會는 디지털 방송 도입과 함께 향후 수년 동안 독일 유료 TV방송 시장이 급속히 확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합작투자 사업이 디지털 TV와 같은 신규 기술의 이용 측면에서는 利點도 있지만 디지털 유료 TV와 같은 다른 서비스 시장까지 보호 대상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일 시장과 양립할 수 없다고 하여 합작투자사업의 설립을 금지하였다. EC위원회에 의한 합병등의 금지 결정은 이것이 두번째이다.

(94. 11. 8, 11. 11. Finanical Times)

## EC위원회, 합작투자회사 設立計劃 禁止

EC委員會는 94년 11월 9일 독일기업 3社의 합작투자사업 설립계획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합작투자사업(MSG)은 독일의 Bertelsmann(세계 제2위의 미디어 그룹), Kirch

## 브라질, 新獨占禁止法 제정 · 실시

브라질은 94년 6월 10일 새로운 독점금지법을 제정, 시행하였다. 이 법률의 목적은 가격 협정과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억제하는 것이며,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기업의 행위

는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이 법은 특히 가격 협정, 경쟁자와의 판매 조건 설정행위, 경쟁자간에 합의된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보이코트,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 저해 행위, 경쟁자의 원재료 기술 획득 방해 행위, 경쟁자의 대중 매체에의 접근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를 금지하고 있는데, 新法에 의하면 시장 지배란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시장 점유율이 30%를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新法은 벌금액을 減額하였는데, 위반한 기업은 同賣出額 또는 부당 이익의 1~30%까지에서 높은 금액을 택하여 벌금을 과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적용 대상을 임원과 개인까지 확대, 기업에 과해지는 벌금의 10~50%까지 과해지며 누범의 경우는 벌금액이 2배로 높아진다.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1인당 최고 5천 달러의 벌금이 과해지며 개인의 예방적 구류도 인정하고 있다. 이외에 덤펑을 금지하고 제조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생산 규모를 삭감하거나 기업이 사회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94. 6. 30. Financial Times)

EC歐洲위원회, 板紙 제조업자의  
가격 카르텔에  
高額 制裁金 부과

歐洲위원회는 94년 7월 13일, 유럽 최대 규모의 가격 카르텔을 결성한 板紙 제조업자 19社에 총 13,215만 ECU(약 1,300억 원)의 제재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하였다.

위원회에 따르면 가격 인상은 소비자의 반대나 원자재비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6개월마다 먼저 한 회사가 가격을 인상하면 정해진 날짜에 다른 회사가 이어서 인상하는 방식으로, 1987년부터 1990년까지 3년 동안 6~10%의 가격 인상이 있었다고 한다.

담합 업체 19社에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유럽의 판지제조업자들로 구성된 PG paperboard라는 사업자 단체의 관리 하에 활동을 위장한 채, 1986년부터 1991년 까지 국제적 林業會社나 製紙會社도 끌어들여 일정한 가격 인상 계획을 세웠던 경쟁저해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94년도 중에 단일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위원회가 벌금을 명한 세번째 사건이다.

(94. 7. 14. Financial Times)

日本流通問題研究會, 割引販賣店의  
성장과 제조업체의 유통정책의  
변화' 보고서 공표

流通問題研究會(會長 鶴田俊政)는 1992년 이후 할인 판매점의 급성장에 따른 제조업체의 유통정책 변화에 대해 경쟁 정책상

의 평가와 금후의 과제에 대해 검토한 조사 보고서를 公表하였다.

이 보고서는 할인 판매점의 성장, 제조업체의 할인 판매점에 대한 정책 변화 및 경쟁 정책상의 평가와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할인 판매점의 성장 배경으로는 ① 엔고 및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의 高品質 低價格 상품 수입, ② 대규모 소매점법의 진입 규제 완화, ③ 유통 거래 관행 가이드라인의 공표를 통한 독점금지법의 運用明確化 등을 꼽고 있다.

할인 판매점의 경영 정책은 ① 低費用運用(Law Cost Operation), ② 低收益 商品의 높은 回轉率, ③ 產地·去來先 상품의 개발 노력 및 안정적 공급선 확보, ④ 유통 주도권의 확보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러한 할인 판매점은 현금 거래 및 반품하지 않는다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거래 가격을 낮출 뿐 아니라 대량 거래에 따른 리베이트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상품 가격의 저하 효과를 이용하고 있다.

제조업자의 입장에서는 할인 판매점과 제휴함으로써 리베이트를 간소화하고 공동으로 판매·생산 계획을 세워 소비자의 선호에 따른 상품 생산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소매업자의 경우는 제조업체의 희망 소매가격 대신에 독자적인 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조업체가 계열 소매업자를 선별하여 소매점 지원이나 정보망 구축을 통해 소매업자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소매업자의 경영 자유를 악화시킬 수 있는 독점금지법상의 문제가 있다. 리베이트도 제조업자가 지금 기준이 불명확한 리베이트를 재량적으로 제공할 경우, 계열 소매점을 제조업체의 판매 정책에 따르도록 하는 계열 소매점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게 되어 독점금지법상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94. 11월호. 公正取引)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物流 분야의 정부 규제 개선에 관한 조사 공표

日本公正去來委員會는 物流 분야에서의 정부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연구 분야는 항만운송 사업과 화물 운송 취급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종래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수급 조정 조항을 포함한 진입 규제, 운임·요금의 가격 규제 등에 광범위한 정부의 규제가 실시되어 왔었다.

그러나 현재는 物流分野에서의 정부 규제나 행정 지도로 인하여 사업자의 합리화 노력이 상실되고 기존 사업자의 보호 및 카르텔의 온상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 이익이나 타산업의 사업 이익이 저해되고 있다.

物流分野에서의 정부규제 및 독점금지법 적용 제외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① 需給調整的 觀點에서 진입규제 및 독점금지 적용제도의 금지, ② 需給調整的 要件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진입규제의 개선, ③ 물류 네트워크의 형성을 저해하는 각 운송 분야별 진입 규제의 개선, ④ 거래선 사업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염두에 둔 규제의 개선, ⑤ 가격 규제 및 가격에 관한 독점금지법에 적용 제외 제도의 금지, ⑥ 인·허가에 대한 사업자단체 간여의 개선, ⑦ 자가용 운송에 대한 규제의 개선, ⑧ 신규 진입시 리스 이용 제한의 폐지, ⑨ 물류 분야에서의 독점금지법의 엄격하고 공정한 운용 등이다.

(94. 9월호. 公正取引)

### 美國 反트러스트局, 垂直的 合併禁止 동의판결

미국 법무부 反트러스트局은 Tele-Communication Inc. (TCI, 有線放送運營會社)와 Liverty Media Corp. (프로그램 제작회사)의 합병계획에 대하여 反트러스트法 위반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提訴, 同意判決하는 것에 합의했다.

TCI는 콜로라도주 소재의 미국 최대 유선다중방송 시스템 운영회사로서 가입자 수는 1,000만 명을 넘고 있다. 이 회사는 Discovery Channel Turner Br-

oadcasting Systems Inc. 등에게 비디오 제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시청자에게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기 때문에 방영과 제작 프로그램 업종이 수직적으로 결합된 회사이다.

Liverty社는 콜로라도주 소재의 주요 유선방송 프로그램 제작 회사로서 他有線放送社(가입자 수 300만 명)와도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Black Entertainment, QVC 등에게 많은 제작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두 회사의 합병은 방송운영회사와 제작 프로그램의 제공자간의 수직적 통합이 되어 타유선 방송사의 인기있는 제작프로그램의 구입을 어렵게 하고, 독립의 프로그램 제작사는 유선방송회사에 자기 제품의 판매가 어렵게 됨으로써 프로그램 제작사와 다중 유선방송간의 각종 경쟁을 말살하기 때문에 크레이톤法 제7조에 위배 된다는 것이 同意判決의 요지이다.

이 同意判決은 레이건 정권 이후(1981년) 垂直的 合併을 提訴 치 않기로 한 방침을 채택한 후 실제 제소치 않다가 처음으로 제소시킨 사건이다.

(95. 5. 5. ATRR)

### 미국 법무부, 마이크로소프트社의 불공정 계약 동의판결

미국 法務部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계 최대 회사인 Micro-Soft社(본사 워싱턴주

렛드몬드)가 경쟁 관계를 소멸시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불공정계약 행위(unfair contracts)을 하여 왔으나 앞으로 이러한 위법적인 독점적 관행(monopolistic practices)을 하지 않기로 마이크로소프트社가 약속함으로써 提訴狀과 同意判決案을 1994년 7월 15일 워싱턴 D.C의 聯邦地裁에 제출하였다.

MS-DOS와 Windows 등 operating system 공급자인 마이크로소프트社는 공급선으로 하여금 자사 경합 제품의 개발과 판매를 못하도록 배타적인 부당한 제한적 라이센스 계약(Exclusionary and unreasonably Restrictive licencing agreements)을 체결하였다.

또 PC메이커에 대하여서는 자사 제품인 OS를 탑재한 경우 뿐 아니라 他社가 공급한 OS를 탑재한 경우까지 로얄티 지불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사가 공급한 OS의 耐用期間을 초과한 장기 계약을 체결하여 신규참입을 오래 걸리도록 함으로써 타회사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부정하고 소비자로부터는 PC, OS의 유효한 선택을 빼앗아 기술 혁신을 어렵게 하였다는 것이 同意判決의 요지가 되고 있다.

#### (94. 7. 16. IBL 정보)

### 독일 연방카르텔廳, 전구류 생산회사의 합병 금지

독일연방 카르텔廳은 필립스

社(Philips GmbH, 함부르크 소재)에 의한 린드너社(Lindner Light, GmbH, 뮌헨 소재) 주식의 과반수 취득을 금지하였다. 필립스社는 세계적인 전자공업회사로서 유럽과 세계의 主導的인 電球類 공급자인 네델란드의 Philips Electronic V.社의 계열회사이다.

린드너社 역시 전구류 생산업자로서 필립스社 및 독일의 OSRAM社(유럽과 세계 2위의 전구류 공급업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다. 필립스社와 OSRAM社의 시장 점유율은 80%로서 이 두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General Electric Lighting GmbH, 린드너社, 및 Sli Lightsysteme GmbH와의 마진 격차가 매우 클 뿐 아니라 가격도 현저히 높은 편이다.

그 결과 필립스社와 OSRAM社는 과점적 시장 지배의 법률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필립스社에 의한 린드너社의 주식 취득은 독일 시장에서 소비자로부터 몇 개 안되는 전구류 공급선 중의 하나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이며, 필립스社와 OSRAM社의 시장지배적 과점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식 취득 금지의 이유가 되고 있다.

#### (94. 9. 15. ATRR)

###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법 域外適用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미국 법무부는 94년 10월 13일, '94년 국제 사업 활동에 대한反트러스트法 適用 가이드라인' 이란 제목으로 독점금지법의 域外適用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域外에서 미국의 통상에 손해를 주는 反競爭的 行爲에 대하여 미국의 反트러스트法을 적용하는 동시에 대상국의 경쟁법 집행 당국과의 협력 관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독점금지법의 域外適用時에 발생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네 가지 점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첫째, 이 가이드라인은 우선管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국내 또는 대외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反競爭的 행위는 그러한 행위의 발생지 및 관련 당사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미국 독점금지법의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하고, 管轄의 效果理論(effects doctrine)'은 국제적으로 널리 승인되었다고 단언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가이드라인은 수입에 대하여서는 연방대법원의 Hardford Fire Insurance Co. v. California 사건 판례를 인용하여 셔먼法은 미국 내에서 어떤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려 했고, 또한 실제로 창출한 외국의 반경쟁적 행위에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

비수입 대외 교역에 대하여서는 대외 거래 反트러스트 改善法(Foreign Trade Antitrust Improvements Act)에 따라

외국 시장에서의 미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의 반경쟁적 활동이 미국 시장에 대하여 '직접적·실질적 그리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서면法과 연방거래위원회법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

둘째, 이 가이드라인은 禮讓 (comity)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禮讓은 동등한 주권 국가들 간의 존중이라는 개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경쟁정책 집행기관들은 미국 독점금지법의 적용으로 외국 주권의 중요한 이익이 영향을 받는지를 사전에 판단하여 집행에 참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는 ① 외국에서의 행동과 비교할 때에 위반이라고 주장된 미국 내에서의 행동이 갖는 상대적 중요성, ② 당해 행동에 관련되거나 당해 행동의 영향을 받는 자들의 국적, ③ 미국 소비자, 시장, 수출업자들에 대해 영향을 미칠 목적의 존재 여부, ④ 외국에 대한 효과와 비교할 때 당해 행동의 미국 내에서의 효과의 상대적 중요성과 예측 가능성, ⑤ 당해 행동에 의해 증진되거나 좌절될 합리적 기대의 존재 여부, ⑥ 외국법 또는 외국 경쟁정책과의 충돌 정도, ⑦ 외국 경쟁정책 집행에의 영향, ⑧ 외국 경쟁정책 집행의 유효성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결과 미국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경쟁정책 집행기관들은 독

점금지법의 域外適用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외국 정부의 간여 문제에 대하여 이 가이드라인은 외국 정부는 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한 독점금지법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는 外國主權免除 (Foreign Sovereign Immunity)이론, 외국 주권국이 미국 독점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바로 그 행위를 특정 사업자에 강제하였을 경우, 그 사업자는 이를 항변으로 採用할 수 있다는 外國主權強制理論, 제소된 특정 행동이 주권국의 公的 행위이고 당해 행위가 주권국의 영토적 관할 내에서 취하여졌으며 관련 문제가 상업적인 것이 아니라 통치에 관련된 것인 경우 집행기관이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자제한다는 國家行為理論, 미국 내에서 행정 기관의 조치를 획득하거나 이러한 조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외국 정부의 請願은 비록 그 노력의 의도나 효과가 거래를 제한하거나 독점화를企圖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서면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는 Noerr-Pennington理論을 언급하고 있다.

넷째, 독점금지법의 域外適用과 국제무역규제 문제에 관하여 이 가이드라인은 미국의 국제무역 법령에서 마련된 분쟁 해결을 위한 특정 절차에 따라 외국 기업들이 가격 및 수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에 대하여는 묵시적으로 독점금지법의 적용이 면제된다고 하고 있다.

人的管轄 및 절차적 규칙문

제와 관련하여서는 첫째, 人的管轄에 대하여 이 가이드라인은 독점금지법상 어떠한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그 법인의 주소지, 그 법인이 발견되거나 영업을 행하는 지역의 관할 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인적 관할권을 총족시키려면 미국 헌법상 '최소한의 접촉(minimum contacts)'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둘째, 절차적 규칙에 대하여는 독점금지법의 집행상 필요한 서류나 증인이 외국에 소재하고 있을 경우 집행기관들은 먼저 자발적 협조 요청을 행하고, 강제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련 외국 정부와 협력하고자 하나, 만일 이러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법원이 人的管轄權을 갖는 당사자들에 대한 강제적 조치의 사용도 허용된다고 하고 있다.

한편, 외국이 대항입법을 제정하여 미국 소송 절차에 사용될 문서나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령의 존재는 집행기관이 행한 정보 요청의 비준수에 대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60일간 각계의 의견을 받은 후 채용하게 된다.

#### (94. 10. 13. 미국 법무부 발표)